



PwC 베트남 뉴스레터

OECD 필라2 체계에 따른 베트남
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시행령 발표

2025년 9월



At a glance

8월 29일, 정부는 결의안 107/2023/QH15에 따라 추가 세금 (top-up tax) 규정을 명시한 시행령 236/2025/NĐ-CP를 발표했습니다.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시행령은 OECD 필라2 체계 하 GloBE(Global Anti-Base Erosion) 규칙을 베트남에 적용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합니다. 여기에는 적격국내최저한세(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-up Tax, "QDMTT") 및 소득산입규칙(Qualified Income Inclusion Rule, "IIR")이 포함됩니다.

2025년 10월 15일부터 발효되는 본 시행령은 중요한 시점에 발표되었으며, 이를 통해 다국적 기업이 2024 회계연도의 첫 번째 신고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세부 사항

본 시행령은 OECD의 GloBE 모델 규칙과 일치하며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도입합니다.



QDMTT

베트남에서 운영되는 외국 다국적 기업의
구성기업(CE)에 적용



IIR

베트남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및 해당
기업의 해외 구성기업(CE)에 적용

이 규칙은 직전 4개 회계연도 중 최소 2개 회계연도에 연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
기업 그룹에 적용됩니다.

행정적 의무

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다음을 준비하여
제출해야 합니다:

01

최초 신고 및 등록

- 다국적 기업의 최종 모기업("UPE")의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신고대상 CE 지정 및 CE 명단을 제출합니다.
- UPE의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세금 코드 등록; 회계연도가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된 납세자의 경우, 기한은 시행령 236호의 발효일로부터 90일로 연장되지만,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세금 신고 기한보다 늦어질 수는 없습니다.

02

연간 추가 세금 신고 패키지

- 추가 세금 정보 신고
- 추가 세액 신고
- 회계기준 차이로 인한 불일치 설명
- 연결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 CE의 재무제표
- UPE의 GloBE 정보 신고("GIR")
(QDMTT 납세자에게만 적용됨)

QDMTT 규칙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, 연간 추가 세금 신고 패키지의 기한은 UPE의 회계연도 종료 후 12개월입니다. 단 UPE의 GIR 제출 기한은 2024회계연도의 경우 18개월, 2025회계연도 이후의 경우 15개월입니다.

IIR 규칙을 적용받는 납세자의 경우, 연간 추가 세금 신고 패키지 기한은 2024회계연도의 경우 UPE의 회계연도 종료 후 18개월, 2025 회계연도 이후의 경우 15개월입니다.

세부 사항

합작투자 및 구조와 소수 소유 구성기업에 대한 별도의 규칙

합작투자, 합작투자의 자회사, 소수 소유 구성기업("MOCE")은 별도로 취급됩니다. 이들의 유효 세율과 추가 세금은 주요 다국적 기업 그룹과는 독립적으로 계산되며, 이는 서로 다른 소유권 및 보고 구조를 반영합니다. 이러한 기업은 별도의 신고, 세금 코드 등록 및 연간 추가 세금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.



통화 및 회계기준

UPE의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적용되는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CE의 재무제표가 사용됩니다. 특정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다른 회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UPE의 연결 재무제표에 사용된 통화는 추가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. 추가 세금 납부는 해당 통화 또는 신고일의 평균 환율을 적용한 베트남 동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


세부 사항

경과기간 구제 조치

OECD의 권고에 따라, 베트남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지만 2028년 6월 30일 이후에 종료되는 회계연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

행정 벌과금 감면:

경과기간 동안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벌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:

- 01** 신고대상 CE 지정 및 CE 명단 통지서의 자연제출 또는 미제출;
- 02** 세금 등록의 자연 제출(최대 90일);
- 03** 세금 등록 변경사항 자연 통지;
- 04** 과소 납부를 초래하지 않는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세금 신고;
- 05** 특정 조건에 따른 세금 신고서의 자연 제출;
- 06** 특정 조건에 따른 부정확한 세금 신고

경과기간 국가별보고서(CbCR) 세이프하버:

QDMTT 또는 IIR에 따른 추가 세금은 다음 경우에는 "0"으로 간주됩니다:

- 매출이 1,000만 유로 미만, 세전 이익이 100만 유로 미만; 또는
- 간소화된 ETRO이 2024회계연도의 경우 15% 이상, 2025년도의 경우 16% 이상, 2026년도의 경우 17% 이상; 또는
- 세전 이익이 실질기반소득제외 금액(Substance-Based Income Exclusion) 보다 적음.

"Once out, always out" 규칙이 적용됩니다
- 다국적 기업은 한번 세이프하버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에 재진입할 수 없습니다.



Contact us

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
구체적인 자문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Nghiem Hoang Lan
Partner
nghiem.hoang.lan@pwc.com



박준형 – 호치민 사무실
Director, Korean CPA
+84 (28) 3823 0796 Ext. 4611
park.junhyung@pwc.com



Richard Irwin
Partner
r.j.irwin@pwc.com



www.pwc.com/vn